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재난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취약청년 사회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고독사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에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16명(8급 16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정원 8명(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국립소록도병원의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 및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 국립나주병원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부곡병원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춘천병원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공주병원의 정원 1명(5급 1명) 및 국립재활원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국립소록도병원의 의무직렬 전체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

을 2024년 1월 14일까지에서 2026년 1월 14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연금급여팀과 청년정책팀을 각각 신설하며, 보건복지부 하부조직의 명칭 및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행정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6항 중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행정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자립지원과”를 “자활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립지원과장”을 “자활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자활급여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중앙·광역자활센터”를 “광역자활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한국자활복지개발원(한국자활연수원 포함)의 운영,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제11항제4호 중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보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각각 “지역사회보장협의

체”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확충”을 “확충, 교육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및 지원
12. 통합사례관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대책의 수립·시행
14. 고독사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
15.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
16.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7조제12항제1호 및 제2호 중 “보건복지급여”를 각각 “사회보장급여”로 하고, 같은 호 중 “사전검토”를 “공통기준 검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보건복지급여”를 “사회보장급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5호)부터 제8호(중전의 제7호)까지 중 “보건복지급여”를 각각 “사회보장급여”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령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방법, 절차 및 장소 확대에 관한 사항
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7조제12항제11호(중전의 제8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의 지도 및 육성”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육성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제14항제1호 중 “운영”을 “운영 및 개선 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관리”를 “모니터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격정보와 확인조사 등 사후관리”를 “신청·확인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조회”를 “연계망 구축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6호) 중 “공공데이터 개방”을 “데이터 개방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등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8. 중앙행정기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지원 및 이용기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항 중 “보육사업기획과 및 보육기반과를”을 “보육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 및 청년정책팀을”로, “서기관으로”를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8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1호의2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2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4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㉔ 청년정책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2. 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3.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4. 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5.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6. 청년인턴 채용 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9조제2항 중 “국민연금재정과 및 기초연금과를”을 “국민연금재정과, 기초연금과 및 연금급여팀을”로, “서기관으로”를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노후설계서비스 관리

제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연금급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연금 급여지급계획의 수립

나. 국민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

다. 국민연금 급여수준 조정

라.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마. 장애연금 운영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수립

바. 반환일시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및 급여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서비스체계 혁신

나. 수급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항

라. 외국인 및 재외수급자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적연금 연계 관련 법령 총괄

나. 공적연금 연계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

다. 공적연금 연계급여심의위원회 운영

라. 공적연금 연계제도 교육 및 홍보

마. 공동연계급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

4.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운영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제36조제10항 중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2명),”을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4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869”를 “866”으로 하고, 일반직 계 “859”를 “85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90”을 “289”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94”를 “93”으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12”를 “11”로 하며,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약무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68”을 “69”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33”을 “32”로 하며,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34”를 “35”로 하고, 행정서기 “36”을 “35”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871”을 “868”로 하고, 일반직 계 “861”을 “858”로 하며,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90”을 “289”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94”를 “93”으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12”를 “11”로 하며,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약무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68”을 “69”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33”을 “32”로 하며,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34”를 “35”로 하고, 행정서기 “36”을

“35”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총계 “338”을 “33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38”을 “33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25”를 “323”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중 총계 “184”를 “1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84”을 “18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78”을 “177”로 하고, 같은 표 3호 중 총계 “186”을 “185”로 하며, 일반직 계 “186”을 “185”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83”을 “182”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총계 “119”를 “118”로 하고, 일반직 계 “119”를 “11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17”을 “116”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총계 “132”를 “131”로 하고, 일반직 계 “132”를 “13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30”을 “129”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220”을 “218”로 하고, 일반직 계 “220”을 “218”로 하며, “사회복지주사 1”를 삭제하고, 간호조무서기보 “56”을 “55”로 한다.

별표 5의3 중 총계 “35”를 “34”로 하고, 일반직 계 “35”를 “34”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1”를 삭제한다.

별표 9 중 총계 “356”을 “354”로 하고, 일반직 계 “356”을 “35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20”를 “318”로 한다.

별표 10 제2호를 삭제한다.

보건복지부령 제856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4년 1월 14일”을 “2026년 1월 14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는 기구와 관련되는 제8조제6항, 같은 조 제20항,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 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청년정책팀과 연금급여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청년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및 연금급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청년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구정책총괄과장이 분장하고, 연금급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민연금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보건복지부의 정원 8명(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과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정원 6명(5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1명), 국립소록도병원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1명(6급 1명) 및 국립재활원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

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및 국립재활원에 각
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대변인) ① (생략)	제2조(대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
③ 대변인 밑에 홍보기획담당관	-----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	-----
며, 홍보기획담당관은 부이사관	-----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u>과학기술</u>	----- <u>과학기술</u>
<u>기술서기관·서기관·보건사무관</u>	<u>기술서기관·서기관·보건사무관</u>
<u>·약무사무관·행정사무관</u> 또	<u>·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행</u>
는 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u>정사무관</u>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조의2(기획조정실) ① ~ ⑤	제3조의2(기획조정실) ① ~ ⑤
(생략)	(현행과 같음)
⑥ 기획조정실에 보건복지상담	⑥ -----
센터, 기획조정담당관, 재정운	-----
용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	-----
제개혁법무담당관, 양성평등정	-----
책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국	-----
제협력담당관, 통상개발담당관	-----
및 정보보호팀을 두며, 각 담당	-----
관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과학	-----
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	-----
하고, 팀장은 <u>과학기술서기관·</u>	----- <u>과학기술서기관·</u>
<u>서기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u>	<u>서기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u>

관·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 사무관으로 보한다.	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 - -----.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7조(사회복지정책실) ① ~ ⑤ (생 략)	제7조(사회복지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사회복지정책실에 복지정책 과, 기초생활보장과, <u>자립지원</u> <u>과</u> , 기초의료보장과, 지역복지 과, 급여기준과, 복지정보기획 과, 복지정보운영과, 사회서비 스정책과, 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서비스자원과 및 사회서비 스일자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 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 <u>자활정책과</u> ----- ----- ----- ----- ----- ----- ----- ----- ----- ----- -----.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⑨ <u>자립지원과</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u>자활정책과</u> 장----- -----.
1. <u>종합자활지원계획</u> 의 수립 및 조정	1. <u>자활급여 기본계획</u> ----- --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11. <u>중앙·광역자활센터</u> 의 설 립,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 한 사항	11. <u>광역자활센터</u> ----- -----
12. ~ 15. (생 략)	12. ~ 15. (현행과 같음)
16. <u>자활연수원</u> 설립 및 운영 등	<삭 제>

<u>지원에 관한 사항</u>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u>한국자활복지개발원(한국자 활연수원 포함)의 운영, 지도</u> <u>· 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18. ~ 20. (생 략)	19. ~ 21. (현행 제18호부터 제 20호까지와 같음)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 지역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지역사회복지</u>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u>지역사회보장</u>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u>지역사회복지협의체</u> 등 민관 협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 진	6. <u>지역사회보장협의체</u> ----- -----
7. <u>지역사회복지협의체</u> 활성화 지역 발굴 및 사례 보급	7. <u>지역사회보장협의체</u> ----- -----
8. 사회복지담당인력의 <u>확충</u>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8. ----- <u>확충, 교육</u> <u>지원</u> -----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u>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u> <u>영 및 지원</u>
<신 설>	12. <u>통합사례관리 운영 및 관리</u> <u>에 관한 사항</u>

<신 설>	13. <u>고독사 예방 및 관리 대책의 수립 · 시행</u>
<신 설>	14. <u>고독사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u>
<신 설>	15. <u>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u>
<신 설>	16. <u>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u>
⑫ 급여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 -----.
1. 부내 각종 <u>보건복지급여</u> 사업간 기준의 조정	1. ----- <u>사회보장급여</u> ----- -----
2. 부내 <u>보건복지급여</u> 의 신설 · 변경 시 <u>사전검토</u> 조정	2. --- <u>사회보장급여</u> ----- ----- <u>공통기준 검토</u> ----- -----
3. <u>보건복지급여</u> 의 신청 · 조사 · 결정 · 급여 · 사후관리에 관한 기준 · 방법 · 절차 · 서식 등의 표준화	3. <u>사회보장급여</u> ----- ----- ----- -----
4. <u>보건복지급여</u> 사업별 <u>공통 기준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개선</u>	4. <u>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령에 관한 사항</u>
<신 설>	5. <u>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방법, 절차 및 장소 확대에 관한 사항</u>
5. <u>보건복지급여</u> 관련 공통업무	6. <u>사회보장급여</u> -----

지침의 운영	--
6.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u>보건복지급여</u> 기준 협의 및 조정	7. ----- <u>사회보장급여</u> ----- --
7. 중앙부처간 <u>보건복지급여</u> 정보 연계를 위한 기준 협의	8. ----- <u>사회보장급여</u> --- -----
<신 설>	9. 「 <u>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u> 」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0. <u>사회보장정보시스템</u> 활용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u>사회보장정보원의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u>	11. <u>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육성 및 지원</u> ---
⑬ 복지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u>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u>
⑭ 복지정보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 -----.
1. <u>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u> 에 관한 사항	1. ----- <u>운영 및 개선 계획 수립</u> ----- -----

2. <u>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응용 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사항</u>	<삭 제>
3. 복지대상자의 급여지급자료 생성 및 지급 관리에 관한 사항	3. ----- ----- <u>모니터링</u> ----- --
4.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자격정보와 확인조사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 <u>신청·확인조사</u> ----- -----
<신 설>	5. <u>복지대상자 자격변동 등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u>
5. 복지대상자의 금융재산 조회 에 관한 사항	6. ----- <u>연계</u> <u>망 구축 및 운영</u> ----- -----
6. <u>사회보장정보 통계 및 공공 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u>	7. ----- <u>데이</u> <u>터 개방 지원</u> -----
<신 설>	8. <u>중앙행정기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지원 및 이용 기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u>
⑮ ~ ⑰ (생 략)	⑮ ~ ⑰ (현행과 같음)
제8조(인구정책실) ① ~ ⑤ (생 략)	제8조(인구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인구정책실에 인구정책총괄과, 출산정책과, 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과, 아동학대대응과,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	⑥ ----- ----- ----- -----

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노인건강과, 보육정책과, <u>보육 사업기획과 및 보육기반과</u> 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 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u>보육</u> <u>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 및 청</u> <u>년정책팀을</u> ----- ----- 서기관으로, 팀 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 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전 산사무관·행정사무관으로 -- -.
⑦ 인구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u>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u>	<삭 제>
19. <u>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u>	<삭 제>
20. <u>보건복지부 소관 정책·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u>	<삭 제>
21. <u>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u>	<삭 제>
21의2. 「 <u>청년기본법 시행령</u> 」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u>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u>	<삭 제>

<u>영 지원</u> 22. (생 략) 23. <u>그 밖에 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u> 24. (생 략) ⑧ ~ ⑩ (생 략) <u><신 설></u>	18. (현행 제22호와 같음) <u><삭 제></u> 19. (현행 제24호와 같음) ⑧ ~ ⑩ (현행과 같음) ⑳ <u>청년정책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u> 2. <u>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u> 3. <u>보건복지부 소관 정책·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u> 4. <u>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u> 5.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u>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u> 6. <u>청년인턴 채용 외 관리·운</u>	제9조(연금정책국) ① (생 략) ② 연금정책국에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재정과 및 기초연금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11. <u>국민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u> 가. <u>국민연금 급여지급계획의 수립</u> 나. <u>국민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u> 다. <u>국민연금 급여수준 조정</u> 라. <u>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의</u>	<u>영에 관한 사항</u> 7. <u>그 밖에 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u> 제9조(연금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국민연금재정과, 기초연금과 및 연금급여팀을 -----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으로 ---.</u> ③ ----- -----. 1. ~ 10. (현행과 같음) <u><삭 제></u>
---	--	---	--

<u>지급에 관한 사항</u> <u>마. 장애연금 운영체계 개선</u> <u>및 발전방안 수립</u> <u>바. 반환일시금제도 운영에</u> <u>관한 사항</u> 12.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및 급 <u>여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u> <u>의 사항</u> <u>가. 노후설계서비스 관리</u> <u>나. 급여서비스체계 혁신</u> <u>다. 수급자 사후관리에 관한</u> <u>사항</u> <u>라. 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항</u> <u>마. 외국인 및 재외수급자 관</u> <u>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u> <u>한 사항</u> 13.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운영 <u>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u> <신 설> 14. ~ 16. (생 략) 17.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관한 <u>다음 각 목의 사항</u> <u>가. 공적연금 연계 관련 법령</u> <u>총괄</u> <u>나. 공적연금 연계제도 개선</u>	<삭 제> <삭 제> 14. 노후설계서비스 관리 11. ~ 13. (현행 제14호부터 제 16호까지와 같음) <삭 제>	<u>및 조사·연구</u> <u>다. 공적연금 연계급여심의위</u> <u>원회 운영</u> <u>라. 공적연금 연계제도 교육</u> <u>및 홍보</u> <u>마. 공동연계급여정보시스템</u> <u>운영에 관한 사항 등</u> ④·⑤ (생 략) <신 설>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연금급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u>가. 국민연금 급여지급계획의</u> <u>수립</u> <u>나. 국민연금 급여기준의 관</u> <u>리 및 개선</u> <u>다. 국민연금 급여수준 조정</u> <u>라.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의</u> <u>지급에 관한 사항</u> <u>마. 장애연금 운영체계 개선</u> <u>및 발전방안 수립</u> <u>바. 반환일시금제도 운영에</u> <u>관한 사항</u> 2.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및 급 <u>여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u> <u>의 사항</u>
---	--	---	---

신·구정원대비표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869</u>	<u>866</u>	-3
·	·	·	
·	·	·	
일반직 계	<u>859</u>	<u>856</u>	-3
·	·	·	
·	·	·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 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 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290</u>	<u>289</u>	-1
·	·	·	
·	·	·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u>94</u>	<u>93</u>	-1
·	·	·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u>12</u>	<u>11</u>	-1
·	·	·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 주사·전산주사·약무주사·시 설주사·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u>68</u>	<u>69</u>	+1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u>33</u>	<u>32</u>	-1
·	·	·	
·	·	·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 보건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 통신주사보·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u>34</u>	<u>35</u>	+1
·	·	·	
·	·	·	
행정서기	<u>36</u>	<u>35</u>	-1
·	·	·	
·	·	·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2]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71</u>	<u>868</u>	-3
·	·	·	
·	·	·	
일반직 계	<u>861</u>	<u>858</u>	-3
·	·	·	
·	·	·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 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 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290</u>	<u>289</u>	-1
·	·	·	
·	·	·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u>94</u>	<u>93</u>	-1
·	·	·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u>12</u>	<u>11</u>	-1
·	·	·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 주사·전산주사·약무주사·시 설주사·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u>68</u>	<u>69</u>	+1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u>33</u>	<u>32</u>	-1
·	·	·	
·	·	·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 보건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 통신주사보·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u>34</u>	<u>35</u>	+1
·	·	·	
·	·	·	
행정서기	<u>36</u>	<u>35</u>	-1
·	·	·	
·	·	·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1. 국립정신건강센터			
총계	<u>338</u>	<u>336</u>	-2
일반직 계	<u>338</u>	<u>336</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25</u>	<u>323</u>	-2
·	·	·	
2. 국립나주병원			
총계	<u>184</u>	<u>183</u>	-1
일반직 계	<u>184</u>	<u>183</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78</u>	<u>177</u>	-1
·	·	·	
3. 국립부곡병원			
총계	<u>186</u>	<u>185</u>	-1
일반직 계	<u>186</u>	<u>185</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83</u>	<u>182</u>	-1
·	·	·	

4. 국립춘천병원			
총계	<u>119</u>	<u>118</u>	-1
일반직 계	<u>119</u>	<u>118</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17</u>	<u>116</u>	-1
·	·	·	
5. 국립공주병원			
총계	<u>132</u>	<u>131</u>	-1
일반직 계	<u>132</u>	<u>131</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30</u>	<u>129</u>	-1
·	·	·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국립소록도병원 공무원정원표(제36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20</u>	<u>218</u>	-2
일반직 계	<u>220</u>	<u>218</u>	-2
·	·	·	
·	·	·	
<u>사회복지주사</u>	<u>1</u>	<u><삭 제></u>	-1
·	·	·	
·	·	·	
간호조무서기보	<u>56</u>	<u>55</u>	-1
·	·	·	
·	·	·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3]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5</u>	<u>34</u>	-1
일반직 계	<u>35</u>	<u>34</u>	-1
·	·	·	
·	·	·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u>1</u>	<u><삭 제></u>	-1
·	·	·	
·	·	·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국립재활원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9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56</u>	<u>354</u>	-2
일반직 계	<u>356</u>	<u>354</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20</u>	<u>318</u>	-2
·	·	·	